

# 전임교원 임용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교수로의 승진 전 조기 정년보장(이하 “조기 정년보장”이라 한다), 재임용, 종신보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재임용, 종신보장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규채용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조(임용절차) ① 교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절차는 아래 제2장(신규채용)과 같다. 단,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제17조는 제외) 임상 전임교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 정년보장임용 및 재임용 절차는 각각 아래 제3장(승진임용), 제4장(정년보장임용), 제5장(재임용) 을 따른다.

③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절차는 별도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전임교원의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교원인사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캠퍼스교원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신규채용 및 승진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2. 재임용, 조기정년보장, 전보, 파견, 휴직 및 복직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3. 의원면직, 당연퇴직 및 명예퇴직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⑤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운영하며 각 캠퍼스 학무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및 연구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의학계열 교원의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할 경우에는 의무부총장을 포함하고, 제8조제4항에 의할 경우에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처장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4조(계약 등) ① 재임용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계약기간은 조교수는 3년, 부교수는 5년, 교수는 정년까지의 기간(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계약기간
  - 가. 정년트랙 교수, 부교수, 조교수: 3년
  - 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급여: 「교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또는 계약에 의한 보수

3. 계약조건: 책임강의시간 및 소속 등에 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
5. 재임용 조건 및 절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재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5조(계약기간의 산정) ① 계약기간 중에 승진, 전직에 대하여는 그 발령일로부터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③ 정부 또는 본교와 관련한 공무로 파견·출장·휴직 중인 자가 그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휴직 잔여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교원이 공무를 사유로 하지 아니하는 휴직, 연구년 및 파견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여성 교원이 계약기간 중에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휴직을 한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120일)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2 장 신규채용

### 제 1 절 총칙

제6조(채용자격 및 제한) ① 본교의 교원은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연구 및 교육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고,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춘 자 또는 외국인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신규채용 방법)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및 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충원 분야 및 규모의 결정)

- ① 대학(원)장은 해당 학과(전공)의 교수회의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원분야 및 규모를 교무처장에게 요청한다.
- ② 총장은 대학의 발전계획에 의한 교원 충원전략과 대학(원)의 교원충원 요청내용을 고려하여 연도별 채용분야 및 규모를 포함한 교원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이사회에 제청한다.
- ③ 제2항의 교원충원 요청내용 심의 시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한 충원분야를 수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과에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④ 학과별 세부 충원분야 및 규모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거교적 초빙분야 결정을 위하여 총장이 주관하여 통합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조정처장이 참여한다.
- ⑤ 교무처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충원 분야 및 규모를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대형국책과제의 교수채용 절차) ① 대형국책과제(BK21, MRC, SRC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수채용이 필요한 경우 각 사업단은 사업 신청 전 사업단장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장에게 충원요청을 의뢰한다.  
② 충원분야 및 규모의 결정은 제8조에 따른다.

## 제 2 절 공개채용

제10조(채용공고) 교원의 신규채용 내용은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 지원자격 등을 명시하여 국내·외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11조(지원 서류의 접수) 지원서류의 접수방법은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때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때 접수방법은 교무처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추천서
  3. 학위 및 성적증명서
  4. 경력 및 재직증명서
  5. 연구실적물 및 목록(학위논문 포함)
- ② 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제출서류 심사방법) 교수채용 심사 방법은 기초심사(1차 심사), 전공심사(2차 심사), 면접심사(3차 심사) 등 다단계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임교원 임용규정 시행세칙」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지원자격 및 연구실적의 심사) ① 연구실적은 지원신청 접수 마감 직전월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발표된 것에 한하여 심사한다.

② 지원에 필요한 최소 연구실적은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예술·창작 및 무용계열은 작품발표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취득 예정자와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정한 연구실적 기준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의학계열의 기초교원은 자연계열의 기준에 준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등) ① 대학(원)은 충원분야 및 규모의 결정, 자체심사기준 수립, 심사위원 선정, 공개채용 심사결과(기초심사, 전공심사)심의, 특별채용 대상자 심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 등 교원 관련 기타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선정 및 교체는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③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채용중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을 중단할 수 있다.

1. 응시자수가 채용예정인원 3배수 미만인 경우

## 2. 기초심사, 전공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 ②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캠퍼스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을 중단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 ④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무처장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의 이의내용을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 한다.

제17조(임용제청)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 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 제 3 절 특별채용

제18조(특별채용 절차) ①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교원수급계획 승인 후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원)장과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는 학과(전공)교수 및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특별채용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② 학과(전공)에서 특별채용 대상자가 선정되면 해당학과 또는 전공교수 과반수의 추천과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아래서류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연구계획서
3. 소속대학(원)장의 추천서
4. 학위 및 성적증명서
5. 경력 및 재직증명서
6. 연구실적물 및 목록(학위논문 포함)
7. 학과(전공)교수 과반수 인원의 추천서
8.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 회의록 사본
9. 기타 교무처장이 요구하는 서류

- ③ 특별채용대상자가 선정되면 총장은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회 검증, 「전임교원 임용규정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면접심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인사자문(검증)위원회) ① 특별채용대상자가 선정되면 교수채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자문(검증)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해당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캠퍼스별 연구처장이 되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원 중 3명 내지 5명으로 선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속 학과(전공)에 대한 검증 시 해당 학과 소속 교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별표 6]의 계열별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한 자
2. 채용후보자와 동일 계열 혹은 유사 전공자

③ 자문위원 선정 시,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의거하여 교무처장에게 자문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무처장은 후보자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 ④ 자문위원회는 지원자의 연구실적 확인, 우수성, 평판도 및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자문한다.

- ⑤ 자문위원회의 검증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각 대학(원)장은 교무처장에게 인사자문(검증) 요청과 동시에 대상자의 자료 및 결과 제출
  2. 교무처장은 각 대학(원)의 인사자문(검증) 요청을 수합하여 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검증 요청
  3.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계열별 자문위원에게 검증 의뢰
  4. 자문위원은 지원자의 연구실적 확인, 우수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심사절차 등을 검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5.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계열별 위원들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심사진행 또는 재심사 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
- ⑥ 교무처장은 자문위원회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제16조 제3항부터 제5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채용을 중단할 수 있다.
- ⑦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으로서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필요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는 별도로 외부 자문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우수교원 초빙위원회) 총장은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얻고자 할 때는 우수교원 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특별채용 자격) ① 채용 대상자는 지원서 제출일 기준 최근 4년간 [별표 6]의 계열별 승진기준 중 부교수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상기 연구실적 기준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1항과는 별개로 임용권자에게 특별채용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채용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 4 절 경력계산

제22조(경력산정) 제6조에서의 연구 및 교육경력의 환산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표2] 경력환산조견표와 같다.

1.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통산할 수 있다.
2. 동일기간 중 중복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은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한다.
3. 최종학위취득 이후 경력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따로 2년의 연구경력을 가산할 수 있다.
5. 연구소에서 연구에 종사한 기간은 그 연구소의 학술적 권위, 연구자의 직책 및 연구내용과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하되 국책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 연구소 근무경력은 최대 100%까지, 그 외의 연구소는 최대 50%까지 인정할 수 있다.
6.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사로서의 교육경력은 통산 평균 주당 12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30%를, 주당 12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50%를 인정할 수 있다. 단 총 경력을 환산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할 수 있다.
7. 의학계열 임상 전임교원의 경우 최종학위 취득 후
  - 가. 대학 부속병원 근무경력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근무경력은 박사학위 취득자는 최대 75%까지, 석사학위 취득자는 최대 35%까지,
  - 나.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근무경력은 박사학위 취득자는 최대 50%까지, 석사학위 취득자는 최대 25%까지,

다. 의원 근무경력은 박사학위 취득자는 최대 30%까지, 석사학위 취득자는 최대 15%까지 인정하며,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의 경력은 학위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75%를 인정한다. 단,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의 경력을 제외한 총 경력을 환산하여 최대 10년까지 인정할 수 있다.

8. 산업체 근무경력은 전공분야의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하되 근무자의 직책, 기관의 성격,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여 근무경력의 최대 70%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총 경력을 환산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할 수 있다.

9. 타 대학 전임교원의 경력을 가진 자는 최종 학위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근무연수 또는 직급을 최대 100%까지 인정하되, 타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전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임교원 퇴직 이후 추가 경력은 가산할 수 있다.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 전임교원의 경력을 가진 자 중 타 대학 전임교원 임용 이전의 경력환산 인정기간이 전임교원의 근무연수보다 긴 경우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대학 전임교원의 경력 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법학 관련 실무 초빙분야의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최종 학위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 제6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력은 법학 관련 경력에 한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8호에 해당하는 경력은 각급 법원·검찰청·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한 법조 실무경력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의 경우 8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기관에서 근무한 법조 실무경력의 경우 70%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총 경력을 환산하여 박사학위자의 경우 최대 13년, 석사학위자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인정할 수 있다.

12. [별표 2] 경력환산조견표의 적용에 있어 해석에 따라 경력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캠퍼스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여부 및 비율을 정할 수 있다.

13. 총장은 학교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 5 절 신임교원의 신분

제23조(신분보장) ① 신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본교 전임교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신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신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 신임교원은 신규채용일로부터 3년 동안 교무위원(급), 학과(부)장, 전공지도교수의 보직 담임을 제한한다. 단, 위 보직 담임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24조(휴직, 복직, 징계) 신임교원의 계약기간 중의 휴직, 복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경희학원 정관」, 「교원인사 기본규정」을 따른다.

제25조(보수) 신임교원의 보수는 연봉급으로 정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26조(퇴직금) 신임교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27조(신규채용 관련서류 폐기) 신규채용에 관련된 서류는 임용일 기준으로 2년 경과 후 「문서처리규정」에 의

거하여 폐기한다.

### 제 3 장 승진임용

제28조(승진심사 신청자격 및 절차) ① 승진심사 대상자는 아래 각호에 규정된 직급별 최소승진소요기간과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 1. 최소승진소요기간

가. 조교수에서 부교수: 6년. 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조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근무년수는 6년~8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근무년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부교수에서 교수: 5년

2. 휴직기간은 최소승진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승진소요기간에 포함한다.

가.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의한 휴직인 경우

나.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휴직인 경우

다.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3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휴직 중 국제기구·재외국민교육기관 또는 외국기관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3. 타 대학 전임교원의 경력을 인정받아 신규임용된 경우, 인정된 기간만큼 직급별 최소승진소요기간을 단축한다.

4.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경우 제22조에 따른 교육·연구경력 산정결과에 따라 최소승진소요기간을 최대 2년 단축 가능하며 구체적인 단축년수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5.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7조에 의한 파견 교원의 파견기간은 최소승진소요기간에 포함된다.

② 승진심사 대상자는 차기 승진예정일 4개월(4월말, 10월말)전까지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대학(원)장 또는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승진심사를 위한 평가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원): 소속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 대학(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임상계열의 경우 진료과장, 진료부장, 해당병원장, 경희의료원장 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2. 행정부서: 소속 부서장, 부서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 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④ 대학(원)장 및 부서장은 승진심사 대상교원의 승진예정일 4개월 전(4월말, 10월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승진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계열별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 기준

가. 계열은 [별표 3]에 따라 구분하고, 계열별 연구실적의 기준은 신규임용일에 따라 [별표 4], [별표 5],[별표 6]을 적용하되, 2019.3.1. 이후에 승진임용된 교원의 승진에 대하여는 신규임용일에 관계없이 [별표 6]을 적용한다.

나. 대학(원)장은 재적교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에 적용되는 강화된 승진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강화된 승진 내규는 반드시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강화된 대학(원)의 승진 내규를 우선 적용한다.

다. 대학(원)별 별도 승진 기준 제정 시 [별표 6]과 달리 최우수 연구업적을 정할 수 있으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와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2. 대학(원) 교원심사평정표의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 3. 임상 전임교원의 경우 부교수 이상 승진 시 박사학위 소지

⑤ 승진임용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결정하되,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⑥ 교무처장은 평가대상자의 소속 대학(원) 및 부서의 교원심사평정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 및 부서에 재평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승진임용의 제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조건부재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징계처분으로 1년 이상 승진이 누락되는 경우 아래의 기간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가. 정직: 18월

나. 감봉: 12월

다. 견책: 6월

3. 정직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심사는 징계기간 만큼 승진심사를 연기한다.

제30조(연구실적 인정기준) ① 연구실적은 인쇄출판된 실적물을 기준으로 하되, 게재확정된 연구실적의 인정여부는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해당 연구실적은 차기 승진 시 중복인정하지 아니하며, 연구실적의 심사기준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연구실적 기준에 따른다.

② 각 계열별 연평균 외부 수주 연구비의 논문편수 환산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논문 편수 산정 방법에 따른다.

③ 임상진료실적이 탁월한 임상 전임교원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진료실적을 승진 및 재임용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임상진료실적의 심사기준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에 따른다.

④ 타 대학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신규채용된 교원의 경우, 본교 임용 이후의 연구실적부터 인정한다.

⑤ 휴직교원이 휴직기간 중 국내외에서 행한 전공 및 담당과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제28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교원인사규정 제17조의 파견에 의한 기간 중에 행한 연구실적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승진 탈락자의 재심사) ① 승진 심사에 탈락한 교원은 매학기 승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직급별 최소승진소요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되지 아니하고 동일 직급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교원의 경우 본 규정 제41조에 따른다.

제32조(특별승진) ① 특별승진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하여 직급별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자

가. 부교수 특별승진: 조교수 직급에서 업적평가 차등그룹 최고등급 3회 이상 선정

나. 교수 특별승진: 부교수 직급에서 업적평가 차등그룹 최고등급 3회 이상 선정

2. 교원업적평가 결과(총점)가 연도별 평가계열 상위 20% 이내의 업적을 현 직급에서 3년간 연속 유지

3. 대학(원) 교원심사평정표의 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② 특별승진심사 대상교원의 실적평가는 승진예정일 4개월(4월말, 10월말)전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이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최소 승진 소요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 및 부서장은 승진심사 대상자로부터 차기 승진예정일 4개월(4월말, 10월말)전까지 전임교원 특별승진심사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접수한다.

④ 특별승진심사를 위한 평가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원): 소속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 대학(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임상 전임교원의 경우 진료과장, 진료부장, 해당 병원장, 경희의료원장 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2. 행정부서: 소속 부서장, 부서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직급 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을 달성한 경우, 차상위 직급 승진을 위한 승진 소요기간에 관계없이 교원인사 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에 따른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특별승진 할 수 있다.

제33조(승진탈락 이의신청) ① 승진(특별승진 포함) 탈락교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는 승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해당 대학(원)장은 승진탈락교원의 이의신청 접수 시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④ 해당 대학(원)장은 재심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승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은 대상 교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보하고, 대상 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대학(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시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 장 정년보장임용

제34조(정년보장임용)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자
2. 조기 정년보장심사 대상자

제35조(정년보장심사 기준 및 절차) ① 교수 승진 대상자의 정년보장심사를 위해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는 승진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의 연구실적 평가결과와 교원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② 조기 정년보장에 대한 심사기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 가. 조기 정년보장심사에 필요한 최저연구실적[별표 7]
  - 나. 대학(원) 교원심사평정표 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2. 대학(원)장 및 부서장은 조기 정년보장심사 대상자로부터 정년보장 예정일 4개월(4월말, 10월말)전까지 전임교원 조기 정년보장심사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접수하고, 대상교원의 정년보장 예정일 4개월(4월말, 10월말)전까지의 실적을 평가한다.
3. 조기 정년보장심사를 위한 평가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가. 대학(원): 소속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 대학(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임상계열의 경우 진료과장, 진료부장, 해당 병원장,

경희의료원장 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나. 행정부서: 소속 부서장, 부서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 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4.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는 신청자의 연구실적평가결과와 교원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교무처장은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③)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의 정년보장 여부는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6조(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 교원의 정년보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캠퍼스별로 구성·운영하며 각 캠퍼스 학무부총장, 각 캠퍼스 교무처장 및 연구처장등 당연직 위원 3인과 임명직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의학계열 교원의 정년보장심사의 경우에는 의무부총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캠퍼스 학무부총장으로 한다.

③ 총장은 정년을 보장받은 교내 교원 중 계열별 학문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내로 임명직 위원을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사를 위한 학문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총장은 필요시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 인사로 선임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안건 중 자신에 관한 사항이 있는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3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교원의 정년보장에 대해 소속 대학(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1. 학술활동 및 산학협력업적의 내용 및 수준

2. 교육 및 실천활동 내용 및 수준

3. 교육관계 법령 준수 및 본교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위 등과 관련된 내용

② 위원회는 교원의 정년보장 심사결과 보고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전달한다.

제40조(정년보장임용 탈락 이의신청) ①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서 정년보장임용 탈락 의견으로 기재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 전달한 경우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위원장은 해당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위원장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② 해당 대학(원)장은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정년보장임용 탈락 교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원정년보장심사 탈락 교원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원)장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를 거쳐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무처장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의 이의내용 접수 시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한다.

⑤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는 재심의 결과를 해당 대학(원)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당사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 임 용

제41조(재임용 자격 및 절차) ① 대학(원)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4월말, 10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임용 대상자로부터 전임교원 재임용심사 신청/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다.

②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가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학(원): 소속 대학(원)장, 학과장 또는 전공지도교수(대학원은 부대학원장), 대학(원)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 직급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임상계열의 경우 진료과장, 진료부장, 해당병원장, 경희의료원장 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2. 행정부서: 소속 부서장, 부서장이 지명한 피평가자와 동일학과(전공)의 상위직급 교원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원)장 및 부서장은 재임용심사 대상교원의 재임용 예정 4개월 전(4월말, 10월말)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재임용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계열별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 기준

가. 계열은 [별표 3]에 따라 구분하고, 계열별 연구실적의 기준은 신규임용일에 따라 [별표 4], [별표 5],[별표 6]을 적용하되, 2019.3.1. 이후에 승진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는 신규임용일에 관계없이 [별표 6]을 적용한다. 단, 제4조 제2항 제1호 정년트랙 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기준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와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나. 대학(원)장은 재적교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에 적용되는 강화된 재임용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강화된 재임용내규는 반드시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강화된 대학(원)의 재임용 내규를 우선 적용한다.

다. 대학(원)별 재임용 기준 제정 시 [별표 6]과 달리 최우수 연구업적을 정할 수 있으며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와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라. 직급별 최소승진소요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승진하지 아니하고 동일직급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교원의 경우 최소승진소요기간 경과 후 2021.3.1.이후 도래하는 재임용 회차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1회차 재임용: 재임용 기준의 100%
- 2회차 재임용: 재임용 기준의 150%
- 3회차 이후 재임용: 재임용 기준의 190%

### 2. 대학(원) 교원심사평정표의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④ 재임용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단,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자의 소속 대학(원) 및 부서의 교원심사평정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평정을 해당 대학(원) 및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재임용탈락 이의신청) ① 재임용탈락 교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재임용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는 재임용탈락 교원의 이의신청 접수 시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 탈락자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43조(재임용 심사결과 통보)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총장은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4조(연구실적 인정기준) ① 연구실적은 인쇄출판된 실적물을 기준으로 하되, 게재확정된 연구실적의 인정여부는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해당 연구실적은 차기 재임용 시 중복인정하지 아니하며, 연구실적의 심사기준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연구실적 기준에 따른다.

② 각 계열별 연평균 외부 수주 연구비의 논문편수 환산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논문 편수 산정 방법에 따른다.

③ 임상진료실적이 탁월한 교원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진료실적을 승진 및 재임용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임상진료실적의 심사기준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에 따른다.

④ 타 대학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신규채용된 교원의 경우, 본교 임용 이후의 연구실적부터 인정한다.

⑤ 휴직 및 파견 교원이 휴직 및 파견기간 중 국내외에서 행한 연구실적도 인정한다.

제45조(재임용 탈락자의 임용유예 및 승진시기) ① 연구실적 또는 교원심사평정 결과가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재임용에서 당연 탈락한다. 다만,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유예하여 조건부 재임용 할 수 있다.

②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재임용한 교원은 조건부 재임용기간을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최소 승진소요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이 탈락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탈락 통보 후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6 장 종신보장

제47조(용어의 정의) ① 종신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대상교원을 선정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정년에 기한 없이 종신을 보장받아 정교수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종신보장이라 함은 재직교원으로서 심사절차에 의하여 종신까지 정년을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제48조(종신채용 및 종신보장의 자격) 연구, 교육, 실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석학으로 인정된 자(자신만의 고유한 이론 제시, 세계적 수준의 학술상 수상 등)에 한하여 종신채용 및 종신보장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49조(심사절차) ① 대학(원)장은 선정 기준에 적합한 후보자를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한다.

② 교무처장은 종신보장심사위원회에 대학(원)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자료를 제출한다.

③ 종신보장심사위원회는 대학(원)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검증하며 후보자의 처우, 평가 및 지원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 ④ 종신보장심사위원회의 검증과 심의를 거친 후보자의 심사 결과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⑤ 상기 절차와 관계없이 총장 또는 우수교원초빙위원회에서 종신채용 및 종신보장 교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50조(종신보장심사위원회) ① 종신채용 및 종신보장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신보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부총장(학무(서울), 학무(국제), 의무, 행·재정), 서울·국제캠퍼스 교무처장, 서울·국제캠퍼스 연구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명직으로 내부위원 2인과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무부총장(서울)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신채용 및 종신보장 후보자 심사
2. 종신보장 후 평가
3. 종신보장 교수의 처우(급여, 책임강의시간 등),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④ 심사위원회는 연구업적, 교육, 실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자문위원회는 국내·외 해당 학문분야 권위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1조(종신보장후 평가) ① 종신채용 또는 종신보장 교원은 종신보장 이후 매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 말에 연구, 교육, 실천분야 활동의 탁월함(excellence)을 평가받아야 한다.

② 종신보장 후 평가 대상교원의 실적평가는 재평가 종료 예정 4개월(4월말, 10월말) 전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대학(원)장은 대상자의 연구, 교육, 실천 분야의 실적 자료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2. 교무처장은 심사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처우를 결정한다.
4.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대상자의 처우를 결정한다.

제52조(처우) 종신채용 또는 종신보장 교원의 급여, 책임강의시간 및 기타 처우는 계약으로 정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53조(종신보장의 효력) 종신채용 또는 종신보장 교원은 본인에 의한 의원면직,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이나 사망에 따른 당연퇴직을 제외하고는 종신까지 정년을 보장받는다.

제54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교원 인사규정, 교원신규임용규정은 폐지한다.

② 제32조 제3항 1호의 [별표 2] 및 제39조 제2항 1호의 [별표 3]의 기준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승진임용, 재임용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승진임용 및 재임용 평가기간이 2009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실적은 구 규정을,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적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제36조 제2항은 개정일로부터 기산한다.
- ④ 제42조 제2항의 실시 시기는 본 규정 시행일 이후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일이전에 매년 4월 및 10월 승진한 자는 향후, 매년 3월 및 9월 승진대상자로 승진심사를 한다.
- ② 본 규정 개정 전 및 개정 후의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을 적용 할 경우 신구 규정에 관계없이 [별표 8]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 ③ [별표 8] 기준 적용 시 승진 및 재임용 심사기간은 신규임용자는 임용일 이후, 본교에서 1회 이상 승진 및 재임용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일(4월말, 10월말) 이후의 연구실적부터 평가대상으로 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 [별표3] 및 [별표 9]의 저서실적의 인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승진임용, 재임용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1]의 경력환산조견표의 경력인정은 2015년 3월 1일부 신규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 [별표3], [별표9] 및 [별표10]의 산학협력연구실적의 논문실적 대체율은 2016년 3월 1일 이후 심사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9.2.28. 이전에 임용(신규임용, 승진, 재임용)된 교원이 승진 심사에서 탈락 혹은 승진심사를 포기하여 승진이 유예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직급별 최초 승진예정일이 2019.3.1. 이후인 경우 최초 승진예정일로부터 3년간 임용시기에 따라 [별표 4], [별표 5]를 적용하고, 이후로는 [별표 6]을 적용함
2. 직급별 최초 승진예정일이 2019.2.28. 이전인 경우 2022.2.28.까지 임용시기에 따라 [별표 4], [별표 5]를 적용하고, 이후로는 [별표 6]을 적용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A) 교원의 경우 조교수로 직급을 변경하며,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B) 교원의 경우는 승진임용 시 조교수로 직급을 변경한다.

②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조교수(A) 및 조교수(B)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은 종전 규정의 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임교원 임용자격

전임교원 임용자격

구 분	자 격 사 항
조교수	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8년 미만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6년 미만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부교수	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8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교수	1.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자 2.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1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 위 표는 제22조에 의하여 환산된 연한임

[별표 2] 경력환산조견표

## 경력환산조견표

구 분		반영비율(%)	비 고
대학교	전임교수	100	
	연구, 강의교수, 국가연수원 교수	70	
	객원, 초빙교수	50	
	겸임교수	30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전임교수	80	
강사(시간강사)	주당 12시간 미만	30	총경력을 환산하여 3년 초과 불가
	주당 12시간 이상	50	
국책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 연구소 경력		최대 100	기관장(대표) 발행 증명
Post-Doc 경력		50	
대학연구소 연구원		50	총장 발행 증명
		10	연구소장 발행 증명
정부기관 근무(예: 교육부 서기관)		50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조 실무 경력	각급 법원·검찰청·법무법인 및 이에 준하는 경력	80	최종 학위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총경력을 환산하며, 박사학위자는 최대 13년, 석사학위자는 최대 15년까지 경력 인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산업체 근무	산학협력중점교수	70	총 경력을 환산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
	일반교원	30	
의학계열	대학 부속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근무경력	가. 최종 박사학위자: 최대 75 나. 최종 석사학위자: 최대 35	총 경력을 환산하여 최대 10년까지 인정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근무경력	가. 최종 박사학위자: 최대 50 나. 최종 석사학위자: 최대 25	

구 분	반영비율(%)	비 고
의원 근무경력	가. 최종 박사학위자: 최대 30 나. 최종 석사학위자: 최대 15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경력	75	

\* 경력을 환산하여 연단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대학의 조교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별표 3] 교원 소속별 적용 계열구분표

## 교원 소속별 적용 계열구분표

평가계열	소속 단과대학(전공)
인문·체육	문과대학, 외국어대학, 체육대학, 본 계열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사회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제외), 이과대학(인문지리 전공), 국제대학, 국제대학원, 평화복지대학원, 한의과대학(원전학, 의사학 전공자, 한의교육학),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교육학),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학교육학, 의인문학), 본 계열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예술·창작	음악대학, 미술대학, 예술·디자인대학, 공과대학(건축학과), 무용학부, 본 계열 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공학	공과대학(산업경영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제외),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본 계열 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자연계 A	이과대학(수학과, 지리학과 제외), 약학대학(임상약학, 임상한약학, 사회약학 및 산업약학 제외), 기초 의·치·한의학 계열 대학(원), 응용과학대학(응용수학과 제외), 생명과학대학, 동서의학대학원, 본 계열 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자연계 B	이과대학(수학과, 자연지리전공), 간호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응용수학과),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공과대학(산업경영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약학대학(임상약학, 임상한약학, 사회약학 및 산업약학), 본 계열 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임상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임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임상), 한의과대학(임상), 본 계열 관련 특수대학원 및 연구소(부서 포함)

- ※ 교원의 평가계열은 신입생 입시모집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교수의 최종 학위 등 객관적 근거가 있을 경우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 및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
- ※ 단과대학(전공)의 특성에 따라 평가계열의 변경 및 신설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업적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및 신설할 수 있음
- ※ 후마니타스칼리지 소속 교원은 최종학위의 계열을 적용함

[별표 4] 교원 직급별 승진 및 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

## 교원 직급별 승진 및 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

[2010.2.28일 이전 신규임용 교원 적용]

<계열별 승진 · 재임용 기준>

계열구분	승진	재임용
인문·사회·체육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1.25편/연 ×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기간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1.25편/연 × (재)임용 기간 × 40%
예술·창작·무용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1편/연 ×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기간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1편/연 ×(재)임용 기간 × 40%
자연 A	SCIE 게재 논문 1편/연 ×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기간	SCIE 게재 논문 1편/연 × (재)임용 기간 × 40%
자연 B	SCIE 게재 논문 0.75편/연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기간	SCIE 게재 논문 0.75편/연 × (재)임용 기간 × 40%
임상 (의·치·한의)	SCIE 게재 논문 0.75편/연 ×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기간	SCIE 게재 논문 0.75편/연 × (재)임용 기간 × 40%

-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 인정 대상기간은 승진심사 대상일로부터 최소 승진 소요기간을 역산하여 계산
- 직급별 최소승진소요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승진하지 아니하고 동일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본 규정 제41조에 따른 재임용 기준을 적용
-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 시 개인 의사에 따라 [별표 6]의 기준으로 심사 진행 가능

<실적 인정기준 및 평정 기준>

• 계열별 실적 인정기준

- ① 인문·사회·체육: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A&HCI, SSCI, SCI, SCIE,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 ② 예술·창작·무용: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A&HCI, SSCI, SCI, SCIE, 작품활동실적,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 ③ 자연A·자연B·임상: SCI, SCIE, A&HCI, SSCI,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 ④ 논문실적은 계열별 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저서실적, 작품활동실적 및 산학협력 연구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실적별 최대 반영비율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자연A·B 및 임상계열의 경우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30%까지 대체 가능
  - 저서실적: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30%까지 대체 가능하며, 대체 가능 저서실적은 국내·국제전문학술서적(단행본에 한함) 및 번역물(단행본에 한함)에 한함
  - 작품활동실적: 예술·창작·무용 계열의 경우 논문실적을 작품활동 실적으로 100% 대체 가능하며, 한국연

- 구재단 등재지 논문 1편은 50점 이상 작품활동 실적점수 200점으로 대체 가능
- 산학협력연구실적: 산업체 연구비 수주실적은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100%까지 대체 가능하며, 산업체 연구비 수주실적을 제외한 산학협력연구실적은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50%까지 대체 가능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연구실적으로 100% 대체 가능)

- 연구논문실적 평정 기준
  - ① 승진·재임용 심사 시 반영되는 각 연구실적을 기준실적으로 대체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구분		연구실적별 대체 인정 비율 (기준실적 1편당)				
기 준 실 적	SSCI / A&HCI	SCI	SCIE (2019년 12월 31일 이전)	SCIE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지	기타실적
	국내지*	6	3	2.4	3	
	SCIE	2	1	0.8	1	0.33

\* 국내지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 ② Nature·Cell·Science 및 Impact Factor 20 이상 국제학술지 논문 1편은 SCIE 10편으로 계산

- 산학협력연구실적 평정 기준
  - ① 본교 산학협력단 명의 국내 특허 등록은 SCIE의 1/2편, 국제 특허 등록은 2편으로 계산( $1/n$  적용)
  - ② 연평균 외부수주연구비(연평균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자연 A,B, 임상 계열 :
      - 2008.12.31까지의 실적: 연평균 금액 1억원 당 SCIE 1편(예: 수탁액이 1억5천만원인 경우 SCIE 1편)
      - 2009.12.31까지의 실적: (연평균 금액/1억5천만원) × SCIE 1편(수주금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2010.1.1이후의 실적: (연평균 금액/1억5천만원) × SCIE 1편
    - 인문·사회·체육·예술·창작 :
      - 2009. 12.31 까지의 실적: (연평균 금액/1억원) × 국내1급 3편(수주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2010.1.1이후의 실적: (연평균 금액/1억원) × 국내1급 3편
  - ② 기술이전 수입료(2011.1.1이후 실적, 연평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자연 A,B, 임상계열: (연평균 수입료/400만원) × SCIE 0.05편
    - 인문·사회·체육·예술·창작계열: (연평균 수입료/400만원)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0.3편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실적의 평정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2015.1.1.시행)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함

[별표 5] 교원 직급별 재임용·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

## 교원 직급별 재임용·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

[2010.3.1.부터 2019.2.28. 까지 신규임용교원 적용]

<계열별 승진 · 재임용 기준>

계열구분	승진	재임용
인문·사회	SSCI/A&HCI 게재 논문 0.5편/연 x 직급별 최소 승진소요기간	SSCI/A&HCI 게재 논문 0.25편/연 x (재)임용기간
체육·무용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 2편/연 x 직급별 최소 승진소요기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 1편/연 x (재)임용기간
예술·창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 2편/연 x 직급별 최소 승진소요기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 1편/연 x (재)임용기간
자연A	SCIE 게재 논문 2편/연 x 직급별 최소 승진소요기간	SCIE 게재 논문 1편/연 x (재)임용기간
자연B	SCIE 게재 논문 1.5편/연 x 직급별 최소 승진소요기간	SCIE 게재 논문 0.75편/연 x (재)임용기간
임상 (의·치·한의)		

-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 인정 대상기간은 승진심사 대상일로부터 최소 승진 소요기간을 역산하여 계산
- 대학(원)별 내규 제(개)정을 통한 질적 평가지표(IF, H-Index 가산점 부여 등) 반영 가능
- 직급별 최소승진소요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승진하지 아니하고 동일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본 규정 제41조에 따른 재임용 기준을 적용
-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 시 개인 의사에 따라 [별표 6]의 기준으로 심사 진행 가능

<실적 인정기준 및 평정 기준>

• 계열별 실적인정 기준

- ① 인문·사회: A&HCI, SSCI, SCI, SCIE,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 ② 체육·무용: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A&HCI, SSCI, SCI, SCIE, 작품활동실적(무용),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 ③ 예술·창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A&HCI, SSCI, SCI, SCIE, 작품활동실적,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 ④ 자연A·자연B: SCI, SCIE, A&HCI, SSCI, 산학협력연구실적
- ⑤ 임상: SCI, SCIE, A&HCI, SSCI, 산학협력연구실적, 임상진료실적
- ⑥ 논문실적은 계열별 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작품활동실적 및 임상진료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실적별 최대 반영비율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저서실적: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30%까지 대체 가능하며, 대체 가능 저서실적은 국내·국제전문학술서적(단행본에 한함) 및 번역물(단행본에 한함)에 한함
  - 작품활동실적: 무용 및 예술·창작 분야의 경우 논문실적을 작품활동 실적으로 100% 대체 가능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1편은 70점 이상 작품활동 실적점수 200점으로 대체 가능
  - 임상진료실적: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30%까지 대체 가능

- 산학협력연구실적: 산업체 연구비 수주실적은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100%까지 대체 가능하며, 산업체 연구비 수주실적을 제외한 산학협력연구실적은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50%까지 대체 가능(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연구실적으로 100% 대체 가능)
- 산업체 연구비 수주실적을 제외한 대체 실적의 총합은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문·사회계열에 한하여 대학(원) 내규 심의 후 결정에 따라 국제학술지 논문실적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비율은 내규에 따름

- 연구실적 평정 기준

- ① 승진·재임용 심사 시 반영되는 각 연구실적을 기준실적으로 대체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구분		연구실적별 대체 인정 비율 (기준실적 1편당)					
		SSCI / A&HCI	SCI	SCIE (2019년 12월 31일 이전)	SCIE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지	기타실적
기 준 실 적	국내지*	6	3	2.4	3		평정점수/100
	SSCI / A&HCI		0.5	0.4	0.5		평정점수/600
	SCIE	2	1	0.8	1		평정점수/300

\* 국내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② 인문·사회계열 중 대학(원) 내규 심의 후 결정에 따라 국제학술지 논문실적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실적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대체 비율은 대학(원) 내규에 따름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실적의 평정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2015.1.1.시행) [별표1], [별표2],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함

[별표 6] 교원 직급별 재임용·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

### 교원 직급별 재임용·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

[2019. 3. 1. 이후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된 교원 적용]

#### <계열별 승진 · 재임용 일반기준>

-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양적기준과 학과(전공)별 질적기준으로 구성되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학과(전공)별 질적기준은 학과(전공)별 내규로 정함
- 양적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

계열	승진	재임용
인문·체육	① SSCI/A&HCI 게재 논문 0.5편/연 x 직급 재직기간	① SSCI/A&HCI 게재 논문 0.25편/연 x (재)임용기간
	② SSCI/A&HCI 게재 논문실적 평정점수 400점/연 x 직급 재직기간	② SSCI/A&HCI 게재 논문실적 평정점수 200점/연 x 임용기간
무용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 2편/연 x 직급 재직기간	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 1편/연 x (재)임용기간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실적 평정점수 200점/연 x 직급 재직기간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실적 평정점수 100점/연 x 임용기간
예술·창작	① SCIE 게재 논문 2편/연 x 직급 재직기간	① SCIE 게재 논문 1편/연 x (재)임용기간
	② SCIE 게재 논문실적 평정점수 1,000점/연 x 직급 재직기간	② SCIE 게재 논문실적 평정점수 500점/연 x 임용기간
자연A	① SCIE 게재 논문 1.5편/연 x 직급 재직기간	① SCIE 게재 논문 0.75편/연 x (재)임용기간
	② SCIE 게재 논문실적 평정점수 700점/연 x 직급 재직기간	② SCIE 게재 논문실적 평정점수 350점/연 x 임용기간
자연B	① SCIE 게재 논문 1.5편/연 x 직급 재직기간	① SCIE 게재 논문 0.75편/연 x (재)임용기간
	② SCIE 게재 녺문실적 평정점수 700점/연 x 직급 재직기간	② SCIE 게재 논문실적 평정점수 350점/연 x 임용기간
임상		

※ 양적기준은 ①편수기준과 ②점수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양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함

※ 직급별 최소승진소요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승진하지 아니하고 동일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본 규정

제41조에 따른 재임용 기준을 적용

#### <실적 인정기준 및 평정 기준>

- 계열별 실적 인정기준

- ① 인문·사회: A&HCI, SSCI, SCI, SCIE,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 ② 체육·무용: 한국연구재단등재지, A&HCI, SSCI, SCI, SCIE, 작품활동실적(무용),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 ③ 예술·창작: 한국연구재단등재지, A&HCI, SSCI, SCI, SCIE, 작품활동실적,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 ④ 자연A·자연B: SCI, SCIE, A&HCI, SSCI, 산학협력연구실적
- ⑤ 임상: SCI, SCIE, A&HCI, SSCI, 산학협력연구실적, 임상진료실적
- ⑥ 논문실적은 계열별 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작품활동실적 및 임상진료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실적별 최대 반영비율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저서실적: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30%까지 대체 가능하며, 대체 가능 저서실적은 국내·국제전문학술서적(단행본에 한함) 및 번역물(단행본에 한함)에 한함
  - 작품활동실적: 무용 및 예술·창작 분야의 경우 논문실적을 작품활동 실적으로 100% 대체 가능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1편은 70점 이상 작품활동 실적점수 200점으로 대체 가능
  - 임상진료실적: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30%까지 대체 가능
  - 산학협력연구실적: 산업체 연구비 수주실적은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100%까지 대체 가능하며, 산업체 연구비 수주실적을 제외한 산학협력연구실적은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 실적 기준의 50%까지 대체 가능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연구실적으로 100% 대체 가능)
  - 산업체 연구비 수주실적을 제외한 대체 실적의 총합은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50% 를 초과할 수 없음
  - 인문·사회계열에 대하여 대학(원) 내규 심의 후 결정에 따라 국제학술지 논문실적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비율은 내규에 따름
- 연구실적 평정 기준
- ① 승진·재임용 심사 시 반영되는 각 연구실적을 기준실적으로 대체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 함

구분		연구실적별 대체 인정 비율 (기준실적 1편당)				
		SSCI / A&HCI	SCI	SCIE (2019년 12월 31일 이전)	SCIE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지
기 준 실 적	국내지*	6	3	2.4	3	평정점수/100
	SSCI / A&HCI		0.5	0.4	0.5	평정점수/600
	SCIE	2	1	0.8	1	평정점수/300

\* 국내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② 인문·사회계열 중 대학(원) 내규 심의 후 결정에 따라 국제학술지 논문실적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실적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대체 비율은 대학(원) 내규에 따름 (양적기준 중 편수기준 적용 시에 한함)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실적의 평정은 양적기준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편수기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2015.1.1.시행)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기준을 적용
  - 점수기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의 기준을 적용

[별표 7] 조기 정년보장심사 최저 연구실적 기준

### 조기 정년보장심사 최저 연구실적 기준

계열구분	조기 정년보장 심사 최저 연구실적 기준 (본교 신규임용일 이후의 실적)
인문·사회	SSCI / A&HCI 게재 논문 9편
체육·무용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 37.5편
예술·창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논문 30편
자연A	SCIE 게재 논문 30편
자연B	
임상 (의·치·한의)	SCIE 게재 논문 22.5편

- 대학(원)별 내규 제(개)정을 통한 질적 평가지표(IF, H-Index 가산점 부여 등) 반영 가능

<실적 인정기준 및 평정 기준>

- 계열별 실적인정 기준

- ① 인문·사회: A&HCI, SSCI, SCIE,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 ② 체육·무용: 한국연구재단등재지, A&HCI, SSCI, SCI, SCIE, 작품활동실적(무용),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 ③ 예술·창작: 한국연구재단등재지, A&HCI, SSCI, SCI, SCIE, 작품활동실적,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 ④ 자연A·자연B: SCI, SCIE, A&HCI, SSCI, 산학협력연구실적
- ⑤ 임상: SCI, SCIE, A&HCI, SSCI, 산학협력연구실적, 임상진료실적
- ⑥ 논문실적은 계열별 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학협력연구실적, 저서실적, 작품활동실적 및 임상진료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실적별 최대 반영비율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저서실적: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30%까지 대체 가능하며, 대체 가능 저서실적은 국내·국제전문학술서적(단행본에 한함) 및 번역물(단행본에 한함)에 한함
  - 작품활동실적: 무용 및 예술·창작 분야의 경우 논문실적을 작품활동 실적으로 100% 대체 가능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1편은 70점 이상 작품활동 실적점수 200점으로 대체 가능
  - 임상진료실적: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30%까지 대체 가능
  - 산학협력연구실적: 산업체 연구비 수주실적은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100%까지 대체 가능하며, 산업체 연구비 수주실적을 제외한 산학협력연구실적은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50%까지 대체 가능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연구실적으로 100% 대체 가능)

- 산업체 연구비 수주실적을 제외한 대체 실적의 총합은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문·사회계열에 한하여 대학(원) 내규 심의 후 결정에 따라 국제학술지 논문실적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 비율은 내규에 따름
- 연구실적 평정 기준

① 승진·재임용 심사 시 반영되는 각 연구실적을 기준실적으로 대체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연구실적별 대체 인정 비율 (기준실적 1편당)					
구분		SSCI / A&HCI	SCI	SCIE (2019년 12월 31일 이전)	SCIE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지	기타실적
기 준 실 적	국내지*	6	3	2.4	3		평정점수/100
	SSCI / A&HCI		0.5	0.4	0.5		평정점수/600
	SCIE	2	1	0.8	1		평정점수/300

\* 국내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② 인문·사회계열 중 대학(원) 내규 심의 후 결정에 따라 국제학술지 논문실적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실적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대체 비율은 대학(원) 내규에 따름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실적의 평정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2015.1.1.시행)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함

### 대학(원) 교원심사평정표

피평가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평 가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점수
1. 윤리성 (10점)				
	소계			
2. 강의평가 및 교육내용 (30점)				
	소계			
3. 학생지도 (10점)				
	소계			
4. 학내·외 봉사활동 (10점)				
	소계			
5. 연구실적의 정성평가 (40점) <small>*임상진료실적 으로 20점까지 반영 가능</small>				
	소계			
합 계	총 계			
종합의견				
<b>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b>				

\* 평가항목별 평가내용과 세부 배점기준은 해당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 확정·시행함

[별지 제2호 서식]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신청서

##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신청서

APPLICATION FOR RE-APPOINTMENT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소 속 DEPARTMENT			
	현 직급 CURRENT POSITION		신규임용일 DATE OF INITIAL APPOINTMENT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트랙구분 TRACK CLASSIFICATION	정년 · 비정년 (TENURE · NON-TENURE)
임용사항 APPOINTMENT INFORMATION	현 임용기간 CURRENT APPOINTMENT PERIOD		재임용 기준 RE-APPOINTMENT CRITERIA	<input type="checkbox"/> 별표 4 <input type="checkbox"/> 별표 5 <input type="checkbox"/> 별표 6
	평가 대상기간 EVALUATION PERIOD			
	재임용 대상기간 RE-APPOINTMENT PERIOD			
<b>평가 대상기간 중 교육·연구·실천 업적</b> EDUCATION/RESEARCH/PRACTICE ACHIEVEMENTS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교육	평가 대상기간 중 교육 관련 주요 업적 기술			
연구	평가 대상기간 중 연구 관련 주요 업적 기술			
실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천 관련 주요 업적 기술			
20 년 월 일부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 hereby submit this re-appointment application for the term beginning as of <u>DATE</u>				
제출일자(DATE): 20 . . .				

신청인(APPLICANT) :

(서명/SIGNATURE)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To the Chairman of the Faculty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별지 제3호 서식]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

##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포기서

APPLICATION FOR PROMOTION / RENUNCIATION OF PROMOTION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소 속 DEPARTMENT			
	현 직급 CURRENT POSITION		신규임용일 DATE OF INITIAL APPOINTMENT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트랙구분 TRACK CLASSIFICATION	정년 · 비정년 (TENURE · NON-TENURE)
임용사항 APPOINTMENT INFORMATION	연구실적 평가 대상기간 EVALUATION PERIOD		승진 기준 PROMOTION CRITERIA	<input type="checkbox"/> 별표 4 <input type="checkbox"/> 별표 5 <input type="checkbox"/> 별표 6
	평가 대상기간 내 휴직 및 징계기간 LEAVES OR DISCIPLINARY PERIOD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b>평가 대상기간 중 교육·연구·실천 업적</b> EDUCATION/RESEARCH/PRACTICE ACHIEVEMENTS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교육	평가 대상기간 중 교육 관련 주요 업적 기술			
연구	평가 대상기간 중 연구 관련 주요 업적 기술			
실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천 관련 주요 업적 기술			
※ 해당란에 √표시 하시오. Please check the appropriate box.				
<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부 전임교원 승진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a promotion for the term beginning as of <u>DATE</u>				
<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부 전임교원 승진심사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a renunciation of promotion for the term beginning as of <u>DATE</u>				

제출일자(DATE): 20 . . .

신청인(APPLICANT) :

(서명/SIGNATURE)

##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To the Chairman of the Faculty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 전임교원 특별승진심사 신청서

APPLICATION FOR EARLY PROMOTION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소 속 DEPARTMENT			
	현 직급 CURRENT POSITION		신규임용일 DATE OF INITIAL APPOINTMENT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임용사항 APPOINTMENT INFORMATION	연구실적 평가 대상기간 EVALUATION PERIOD		승진기준 PROMOTION CRITERIA	<input type="checkbox"/> 별표 4 <input type="checkbox"/> 별표 5 <input type="checkbox"/> 별표 6
	평가 대상기간 내 휴직 및 징계기간 LEAVES OR DISCIPLINARY PERIOD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b>평가 대상기간 중 교육·연구·실천 업적</b> EDUCATION/RESEARCH/PRACTICE ACHIEVEMENTS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교육	평가 대상기간 중 교육 관련 주요 업적 기술			
연구	평가 대상기간 중 연구 관련 주요 업적 기술			
실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천 관련 주요 업적 기술			
20 년 월 일부 전임교원 특별승진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an early promotion for the term beginning as of DATE

제출일자: 20 . . .

신청인(APPLICANT) : (서명/SIGNATURE)

###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To the Chairman of the Faculty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별지 제5호 서식] 전임교원 (조기)정년보장심사 신청서

전임교원 (조기)정년보장심사 신청서

APPLICATION FOR EARLY TENURE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소 속 DEPARTMENT		
	현 직급 CURRENT POSITION		신규임용일 DATE OF INITIAL APPOINTMENT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임용사항 APPOINTMENT INFORMATION	연구실적 평가 대상기간 EVALUATION PERIOD		
	평가 대상기간 내 휴직 및 징계기간 LEAVES OR DISCIPLINARY PERIOD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b>평가 대상기간 중 교육·연구·실천 업적</b> EDUCATION/RESEARCH/PRACTICE ACHIEVEMENTS DURING THE EVALUATION PERIOD			
교육	평가 대상기간 중 교육 관련 주요 업적 기술		
연구	평가 대상기간 중 연구 관련 주요 업적 기술		
실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천 관련 주요 업적 기술		

20 년 월 일부 전임교원 (조기)정년보장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an early tenure for the term beginning as of DATE

일 시 (DATE) : 20 . . . .

신청인(APPLICANT) : (서명/SIGNATURE)

##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 위원장 귀하

To the Chairman of the Faculty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